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치의학·한의학 및 법학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18989호, 2022.10.18. 공포, 2023.4.19. 시행)됨에 따라 사이버대학 일반·전문대학원의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특수대학원의 설치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또한 대학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가액의 기준 등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대학 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33725호, 2023.9.19. 공포, 2023.9.19.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이버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정비하고, 사이버대학 조교 확보 기준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치방식 변경(영 제3조)

기존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치시 교육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설치기준을 갖추면 대학 자율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함.

나. 사이버대학 일반·전문대학원 설치인가(영 제4조)

사이버대학 일반·전문대학원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원설치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
설립·개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전환인가(영 제12조의2)

운영중인 특수대학원을 일반·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이
버대학이 대학원 전환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라. 사이버대학 수익용기본재산 요건 완화(영 제7조제1·2·4항, 제5항
신설)

1) 사이버대학 설립 시 학교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가
액의 경우 그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퍼센
트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
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향함

2) 운영 중인 사이버대학의 학교법인이 그 운영수익총액 중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2.8% 이상을 해당 사이버대학의 교
비회계로 전출하면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사이버대학 조교 확보기준 삭제(영 제6조제5·6항)

사이버대학이 조교를 대학 자원으로 확보하도록 기준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을”을 “한다)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수대학원설치인가신청서를 그 특수대학원 개원 예정 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를 “별표3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일반·전문대학원) ① 사이버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해당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대학원(이하 “일반대학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이하 “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설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3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및 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서를 그 대학원 개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및 학칙
2.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3.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 교원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대학원이 설치될 사이버대학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
6. 대학원의 개원 후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대학원의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계획
9.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반 및 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와 해당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일반 및 전문대학원의 설치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운영수익총액”을 각각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수입을 합한”을 “제1호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운영 중인 사이버대학의 학교법인이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사이버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의 제목 “(전환의 신청 등)”을 “(사이버대학 전환의 신청 등)”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대학원 전환의 신청 등) ①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이 해당 특수대학원을 일반 및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3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인가를 받으려는 사이버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및 전문대학원 전환인가신청서를 그 대학원 개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및 학칙
2.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3.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 교원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대학원이 설치될 사이버대학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

6. 대학원의 개원 후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대학원의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계획

9.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4학년도 이전에 인가를 통해 설치한 특수 대학원이 제1항에 따라 전환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이버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수대학원의 일반 및 전문대학원 전환인가신청서를 그 대학원 개원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일반 및 전문대학원 전환인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와 해당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일반 및 전문대학원 전환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대학원 및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기준(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12조의2 제1항 관련)

구분	대학원 및 석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박사과정 학과(전공) 신설
일반대학원 · 전문대학원	3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 확보	· 5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 확보 · 전체 학점수를 기준으로 교원의 강의 비율 60%이상
특수대학원	3명 이상의 관련분야 교원 확보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특수대학원) ① 사이버대학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 버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은 해 당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매체 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 항제3호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특수대학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특수대학원 설치인가신청서를 그 특수대학 원 개원 예정 연도의 전년도 6 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3조(특수대학원) ① ----- ----- ----- ----- ----- ----- ----- 한다)과 그 학위과정의 학과 또는 전공 을 ----- 별표3이 정 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 ----- -----.
1. 특수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 적, 위치 및 학칙	<삭 제>
2.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 의 현황 및 확보계획	<삭 제>
3.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 습 시설 및 설비의 현황 및 확 보계획	<삭 제>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 교원	<삭 제>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
정한다)

5. 특수대학원이 설치될 사이버
대학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

<삭 제>

6. 특수대학원의 개원 후 3년간
의 재정운영계획

<삭 제>

7. 특수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삭 제>

8. 특수대학원의 학생정원 및
학생선발계획

<삭 제>

9. 특수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삭 제>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대학원 설치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결과와
해당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
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
른 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특
수대학원의 설치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의 설
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4조(일반·전문대학원) ① 사이
버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
는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장
은 해당 사이버대학에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대학원(이하 “일반대학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이하 “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설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3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및 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청서를 그 대학원 개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및 학칙

2.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3.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 교원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 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대학원이 설치될 사이버대학 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
	6. 대학원의 개원 후 3년간의 재 정운영계획
	7. 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수 방법
	8. 대학원의 학생정원 및 학생 선발계획
	9.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일반 및 전문대학원 설치인가신 청서를 받은 때에는 설립심사위 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와 해당 사이버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 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고려 하여 일반 및 전문대학원의 설 치의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① ~ ④ (생 략)	제6조(조직 및 교원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이버대학에는 교육·연구 의 지원 및 보조, 학사사무의 보 조를 위한 조교를 학과 또는 학 부 등에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조교의 총수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학생수를 200으로 나눈 몫(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이버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을 말한다)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수익용기본재산은 35억원(전문학사학위를 주는 사이버 대학의 경우에는 25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확보한 수익용기본재산에는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

<삭 제>

제7조(수익용기본재산) ① -----

-----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

② -----

-----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

③ (현행과 같음)

④ -----

수익의 범위는 별표 2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수입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신 설>

제12조(전환의 신청 등) ① ~ ④ (생략)

<신 설>

----- 제1호의 -----

-----.

⑤ 운영 중인 사이버대학의 학교법인이 사이버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액의 2.8퍼센트 이상을 해당 사이버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사이버대학 전환의 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대학원 전환의 신청 등) ①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3조에 따라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의 장이 해당 특수대학원을 일반 및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3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인가를 받

으려는 사이버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및 전문대학원 전환인가신청서를 그 대학원 개원 예정일 8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원의 명칭, 설치 목적, 위치 및 학칙

2. 교육 및 연구용 시설·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3.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습 시설, 설비의 현황 및 확보계획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교원 등의 현황 및 확보계획

가. 교원

나. 겸임교원 또는 초빙교원 (제6조제4항에 따라 교원수에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대학원이 설치될 사이버대학의 과거 2년간의 재무제표

6. 대학원의 개원 후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7. 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교수방법

8. 대학원의 학생정원 및 학생
선발계획

9. 대학원의 개원 예정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4학
년도 이전에 인가를 통해 설치
한 특수대학원이 제1항에 따라
전환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사
이버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수대학
원의 일반 및 전문대학원 전환
인가신청서를 그 대학원 개원
예정일 3개월 전까지 교육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 및 제3
항에 따른 일반 및 전문대학원
전환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
고, 그 심의결과와 해당 사이버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법」 제
11조의2제2항에 따른 평가의 결
과를 고려하여 일반 및 전문대
학원 전환의 인가 여부를 결정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연 락 처	(044) 203 - 6368